

第244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5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10日(水)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審査된案件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1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위원장 **목요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안협의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끝에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에 관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거듭해서 오늘 우리가 토의하고자 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분들께 높이 평가를 하고 사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실무지원단장으로 수고하신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치개혁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범국민정치개혁협의

회 활동경과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회의장주재로 각 당 총무, 정책위의장단 및 정개특위 위원장 모임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혁’이라 하겠습니다-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 13일에 범개혁이 출범하였습니다.

범개혁은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정치자금에 관한 부문과 선거제도·정당 부문에 관한 개혁안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범개혁이 발표한 정치자금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입니다.

우선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화에 관하여 보면, 첫째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지출은 단일계좌를 통하도록 하였으며, 50만 원 이상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 총액의 20%로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권 등의 고액 정액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00

만 원 이상의 기부는 수표, 예금계좌 입금, 우편 환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 지출결의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의 개선에 대하여, 첫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40%는 중앙당의 회계처리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립된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며, 10%는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종합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시지방선거 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 국회의원 선거인수 1인당 1800원씩 계상하던 것을 800원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첫째 지구당 후원회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법인과 단체는 개인후원회에의 기부를 금지하고 정당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이 정당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공제제도에 추가하여 최고 3만 원의 세액공제의 병행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비후보자의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정치자금모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하여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모금액도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와 같이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 모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징역 10년으로 강화하여 공소시효가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되도록 하였고,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선거법 위반사범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무원임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선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정수와 선거구제에 관하여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299인으로 확대하고, 소선거구 지역대표 의원정수를 199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정수를 100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전국명부를 작성하여 전국득표율로 배분토록하였고, 또한 중복입후보는 불허하며,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기로 하였고,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기구에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하여 보면, 첫째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메일과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선관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새마을운동협의회, 언론기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 있는 단체, 향우회, 종친회 등을 명시하여 그 외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흑색선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였고, 선관위에 허위사실 등 위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었습니다.

둘째, 국외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공영제 확대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을 확대하여 현재 15%를 득표할 경우 신고된 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 외에 10%이상 득표한 자에 대하여도 신고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추가하

였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선관위 주선 아래 TV방송, 지역케이블TV 등을 통한 방송토론회, 정당·정책방송연설, 신문광고, 방송광고, 정당·후보자 방송연설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관하여 보면, 첫째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인의 축의금, 부의금을 상시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정당의 모든 집회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을 상시 금지하였습니다.

넷째, 선거일 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당원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당원집회도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비용으로 1회 20만 원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보면, 첫째 선거법 위반 시 처벌수준을 높여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주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위반 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하여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일후 금품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현행 선거일부터 6월로 된 것을 행위시부터 6월로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범죄관련 피고인에 대한 권석재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와 관련한 각종 집회에서 음식물 접대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반환 또는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자, 간부 또는 상근유급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정당·단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관위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을 축소하여 현재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금지된 것을 선거일 전 7일부터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구조개혁에 관하여 보면, 첫째 법정 지구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고, 시·도당 이하의 지역조직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법정 시·도당 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시·도당별 법정 당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여 정당난립을 방지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조직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활동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즉 지역조직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선거구별로 유급상근직원은 1인만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당원 및 근무자에 대한 일체의 수당 및 활동비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원내정당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별도법인으로 반드시 정책연구소를 설치·지원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40%는 정책연구소에, 10%는 반드시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의 중앙당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참여 경선에 관하여 보면 당내경선에 있어서 비당원인 일반 선거구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참여 경선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으로 금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구제, 국회의원정수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수, 인구 상·하한 및 인구기준일 등에 대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지하여 선거구획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말씀을 듣고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 발언하시지요.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鈞 委員** 현재 4당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좋은 개혁안이 나와 있습니다. 각 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정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안을 너무 오랜 시간 보고를 하고 논의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앞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본안을 중시해서 정치개혁특위에 제출되어 있는 각 당의 개혁안과 정치관계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요구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님!

○**신기남 위원** 저는 열린우리당의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결과물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속히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언론에도 밝힌 바 있고 국회 정개특위 공식석상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범개협의 개혁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자문기관의 의견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속력을 주지 않으면 4당이 각양각색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수렴되기 어렵고 또 수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적인 내용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범개협의 내용이 기속력을 갖고 그대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다른 부분이라 해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단지 아쉬운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선거구제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주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역분열구도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지역주민에 의해 뽑히지 않은 비례대표제도로는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안 되고 전국단위의 명부도 중앙당 회의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반반씩 득표율로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번도 지방선거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경과규정을 뒤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사 단끼리는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위가 있으니까 소위별로 가동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저로서는 내주 중에 모든 입법화 조치가 끝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각 소위가 서둘러서 정개특위에서 내주 중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李敬在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敬在 委員** 한나라당 간사로서 이번에 정개협에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정치자금 투명

화에 관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했고 또 정당법과 선거법에 있어서도 좋은 안을 많이 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나라당에서 낸 안을 5, 60%는 이미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도 있으니 많이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초가 조금 전에 신기남 위원께서 범개혁에서 내놓은 것은 기속력을 갖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 중에는 정치개혁과 상관없이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하고 야당을 옥죄는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이 95, 6%가 반대하는 국회의원 정원을 증원시킨다든가 정치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령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서 소선거구제로 해서 비례대표제가 없이도 민주주의의 모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례를 확장하면 개혁인 양 안을 내놓는 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안, 또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안과 범개혁에서 내놓은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나온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은 짜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낸 안 중에서 아주 좋은 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그러나 정치개혁특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법권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은 위원들이 각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柱宣 委員**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정치개혁과 관해서 제안한 개혁적인 내용은 저희 당론과 90%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 중에서는 국민의식이라든지 감정,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즉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한 탁상공론식의 이론적인 제안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아까 李敬在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선거 관련, 정치자금 관련, 정당법 관련 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위원회 의견을 마련해서 4당 간의 협상을 거쳐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만 국회의 일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국회의 권위도 드높이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이후부터 조속히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이번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통한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이룩하겠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4당이 수용할 것은 대폭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199명으로 하는 전제하에 전국구 의원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면서 299명의 국회의원수로 환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심에 찬 토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정신이라든지 원래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제도적인 의의를 볼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의 인구가 격감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 주권이 심히 훼손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회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대폭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의제도가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게 되면 그만큼 대의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등등은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선진 외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례대표는 어디까지나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갖지 못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충,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 취지로 볼 때도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1인 2표제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는 보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구 의원수를 부당하게 감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단체 또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면 일리는 있지만 정치제도만큼 단점과 장점이 예각적으로 부각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상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서 사심을 버리고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개혁하는 사람으로서의 용기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문제는 당위도 되지만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가 하루빨리 신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方鎬 **위원** 우선 정개협의 내용은 물론 전문가들의 고뇌에 찬 좋은 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현실이고 또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치현실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

니다. 이는 기속력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기구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수준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살려가면서 국민의 정서를 살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특정정당 내지 특정단체들과 상당히 교감이 된 편향된 안들이 주요한 부분에서 한두 개씩 발견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수를 늘리는 배경에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지역구를 늘려나가는 것은 다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데서는 비례대표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통성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라는 것은 당 지도부의 전횡에 의해서 한 자리씩 주는 식으로 운영된 것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훌륭한 분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한 통로가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비례대표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역구를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촌 선거구는 거의 통·폐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특히 농촌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지역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선정과정도 지금까지는 거의 당 지도부나 아니면 몇몇 사람의 전횡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앞으로 비례대표의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가의 영입을 전제로 한 비례

대표의 확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공천 과정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런 정도의 지역구 공천과정도 배려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도…… 우리가 지역구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하면 굳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서 전문가 영입라든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구는 가능한 한 인구의 대표성이나 지역의 대표성, 4년 동안 인구가 480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추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비례대표는 동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외에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이런 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위에 넘겨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일부터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이 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신기남 위원님!

○신기남 **위원** 李敬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선관위에서 내놓았던 안, 또 범개혁이 내놓았던 안이 당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과 가장 비슷하다,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열린우리당하고 무슨 교류를 하지 않았느냐 또는 좀더 관심을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입장을 반영하느냐…… 물론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선관위의 안을 대폭 당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건 당연하지요. 저희도 같

은 정치인으로서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앞장서자는 저희 당의 취지로 볼 때 뼈를 깎는다는 의지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내부에서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수의 의원들에게 여론조사도 하고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선관위가 내놓은 안을 당론에 거의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범개혁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범개혁 안은 종전의 시민단체와 선관위 안보다 엄격함에 있어서 한발 앞서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기본적인 태도로 볼 때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라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 기회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더 두둔하고, 서로 교류해서 의견을 맞추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당들도 저희와 같은 자세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개혁의 안에 기속력을 주지 않는다면 각 정당 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길고 어렵고 내용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비개혁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이 정치개혁의 중대한 시기이고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기속력을 주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범개혁에서 주어진 기간도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안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내주신 안의 상당부분이 정치개혁적인 안이라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부분 이를 수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본 위원은 어찌되었든 4당 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범개혁에서 나온 안을 그래도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안을 100%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구체적인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타당성

을 도출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에서 각각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제가 찬동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에 관해서입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후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후원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취지도 이사회 결의만 하면 개인에게 후원금을 주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것은 근절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양성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상당히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자금 기부자를 공개하는 문제는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모두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자를 공개하는 문제가 자칫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나 야당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아주 격감하는 사례를 가져오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지정기탁금제를 실시했을 때 그 지정기탁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여당에 대해서만 지정기탁금 기부를 했지 야당에 대해서는 거의 기부를 하지 않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과연 정치자금 기부자를 낱낱이 공개할 때 그 기부자들이 야당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부할 것인가,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을 감수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그런 점이 좀 걱정됩니다.

또 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비율로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선되어 온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특히 원내 정당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수에 의해서 정치자금 배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득표율보다는 당선된 의원 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원내정당을 장려하는 그런 취지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정당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당이 내걸었던 대선거구제가 채택되지 않고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신기남 위원과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동안 지역갈등 해소 문제 또 선거의 과열풍토를 막자고 하는 문제, 사표를 막자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하는 주장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범개혁에서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수를 299명으로 늘리는데 지역구의원 수는 거꾸로 227명에서 199명으로 줄이는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외국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인 불신이 극도로 팽배되어 있어서 정치인과 국민들 간에 갈등이 심하고 불신이 심한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참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자는 것이 저희 당론이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27명의 이 인원을 199명으로 줄일 때 이것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대표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특히 강원도라든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저희 충청도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 지역대표성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전국구를 늘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구를 늘리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달리 검증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기구라든지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해서 상당히 비례대표 선출을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를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게 외부사람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국구 비례대표 순서라든지, 그 사람은 당 지도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결국 국민들은 당 지도부가 내건 그 리스트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은 결국 간접선거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전국구위원을 그동안 이용해 온 경험칙에 의하면 취지대로 정책전문성을 살리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살리면서 전국구위원을 이용해 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있어서 지역구위원들의 선거자금을 대주기 위한 돈 錢자의 錢國區로 이용된다든지 또는 지도부의 인척관계라든지 가까운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국구가 이용된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민주화하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 수를 현 의원 수, 그리고 지역구의원 수 현 227명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안으로 법을 만들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통과할 때는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각 당의 의견들을 사전에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각 당의 대표인 의원들을 한 명씩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는 것은, 각 당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 당의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꼭 부인할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수를 과반수가 안 되게 하고 외부사람들을 과반수로 함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에는 큰 하자가 없다, 또 지난 16대 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각 당의 의견들보다는 상당히 외부인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었고 그것이 각 당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는 그런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현행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음은 박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희** **위원** 범개혁이 그동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안들이 많고 또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염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돈 안 쓰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폭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李敬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니고 그런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앞으로 뭔가 옥동자를 하나 순산해야 될 텐데 참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개혁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중대선거구제는 개혁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다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국민적인 열망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위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하고 또 조정해서 안 되는 것은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매일 논의만 하다가, 지금 16대 국회 막바지에 법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유효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안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늦어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면서도 현실을 무시하고 금과옥조의 법안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또 정치인들이 할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말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 안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정치행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싶

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회를 선거 120일 전부터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얼핏 보면 상당히 공정한 경쟁으로, 의견상으로는 정치신인과 기존 국회의원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 당직을 맡으신 분 혹은 국회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1년, 2년 동안 지역구에 가서 얼굴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의정보고회 정도인데 이것까지 막아버린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신인에 비해서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기득권을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중대선거구제 말은 하지만 시간표상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이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도 개개인의 이익이 걸려서 10만이냐 11만이냐, 농촌과 도시는 구별을 해서 9만 5000으로 하느냐 10만 5000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하나도 국회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선거구제를 바꾸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우리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주 쑥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지 개혁이다, 아니다, 반개혁이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할 뿐더러 우리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치자금법소위원회 위원장인지 간사인지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소위에서 국민적 바람이 담겨있는 여러 가지 안을 정말 과학적으로, 개혁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소위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불참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언론에 알려져 불이익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소위 운영에 100%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이규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규택 위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개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법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범개혁에서 나온 것을 받아주면 개혁이고 그것

을 받아주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범개혁에서 내놓은 안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반개혁적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보는 개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뜻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개혁특위가 원래는 여야합의의 관례대로 여러 가지 도출해 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치개혁법이랄까 이것은 여야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어쩌면 당의 운명까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합의로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정치개혁특위의 위상을 포기한다든지 우리의 입법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4당 대표에게 넘긴다든지 국회의장한테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안 될 때는 표결처리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는 표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최악의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처리해야 된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이것이 금년 내로 끝나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오늘은 범개혁의 안이 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각 당의 입장을 듣자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빨리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지금 현재 각 당에서 나온 소위 말하면 비례대표 숫자 문제라든지 각 지역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까, 인구 상한선이 얼마나 하한선에 얼마나에 따라서 서울 같은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옛날 통일민주당 때부터 죽 해 왔는데 비례대표의 선정과정이라든지 당선된,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 왔습니다. 검증을 받지 못해요. 지역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전국구로 돌린다는 돈으로 한다든지, 전문성이라는 핑계로 갖다 넣고 자기 측근을 갖

다 넣고 이래 가지고 무슨 사당화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제가 옛날에 통일민주당 때 보았어요.

저는 비례대표 이전에 이것이 유신의 잔재다 이것입니다. 옛날 1공화국, 2공화국때는 없었는데 3공화국 초에도 없었어요. 朴正熙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만들고 헌법학자들 소위 돌격대를 유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유정회를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아주 이미지가 나쁜 것이예요.

지금도 만일 비례대표를 100명 한다면 어떻게 검증할 것이예요? 시민단체요? 누가 검증을 해요? 솔직한 얘기가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이나 무임승차나 또는 자기측근들을 갖다 놓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서 국민이 심판하고 비밀투표와 평등투표, 보통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일개 몇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그러나 각 당에서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두겠다니까 제가 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신잔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범개혁에서 따져보니까 지역구가 60여개가 없어져요. 60여개가 없어지는데 주로 농촌이 없어져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엔에 들어갈 때 13억의 중국과 저 보르네오 100만도 안되는 인구와 유엔에 가입할 때 중국은 표가 10개이고 보루네오는 하나입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농촌사람이나 도시사람이 다 똑같고 평등하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 같은 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핀란드인가 노르웨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인구는 1000명밖에 안되지만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 지역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인구는 1000명이지만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마는 지금도 불만이 강원도가 땅덩어리가 큼니다.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인천이 인구가 많다고 인천보다 국회의원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만이 아니라 한 단위를 대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엔에서 한 국가단위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으로 한 지역 한 단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인구수에 따라서 쪼개고 빠개고 인구 많은 데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서울도 예를 들어서 성동구면 성동구 국회의원이 하나여야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구하고 의정…… 국정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정단위로 뽑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서 만일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단체라든지 또는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몇 십 명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대도시는 두 개 세 개 쪼개고 두 개 세 개씩 쪼개서 우리 국회의원이 그 30만, 15만의 대표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을 그 사람들이 뽑아야 됩니까?

나는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자체가 헌법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농촌도 생각하고 도시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치개혁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4당 대표에게 넘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전재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재희** **위원** 제가 정치자금관련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위에서 논의하는데 참고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낸 안 중에 아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역구 의원 199인, 비례대표 100인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면 273명에서 고정시키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3대 1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의 지역대표성에 지나치게 무리가 가해진다면 10만, 30만 명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증가되는 만큼 증가되는 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안에는 지구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고 유급 당원을 한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은 현행 지구당을 두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 시에만, 선거 90일전이라든지 선거 끝나고 일정기간까지 해서 선거사무소만 두고 지구당 자체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선불복자들은 당해 선거에 있어서는 무소속이든 타당이든 간에 출마를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경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경선불복자는 당해 선거에 출마 금지하는 법률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있어서 저는 자치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공영제가 100% 이루어지면 실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직무의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모금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심규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심규철** **위원** 심규철 위원입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 중 몇 개 부분은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해 본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증원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치를 개혁하자는 입장에서 왜 느닷없이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마련한 안 중에서 바로 이런 부분, 정치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지망생 입장에서 접근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국구 비례대표 증원문제입니다.

국민은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정치권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무슨 발상으로 증원을 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구에 나가기 어려운 정치지망생 입장에서

비례대표의 기회가 늘어나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거가 너무 과열되지 않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똑같은 조건을 누리겠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이것은 정치과열, 선거과열, 혼탁, 불법 선거비용 증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해서 모든 제도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인쇄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120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에 발맞추다 보면 120일 전부터는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 15일경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 정기국회가 제 기간 내에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부득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임시국회 내에 모든 안건이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년 1월까지도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후보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국회에 나올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은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개혁이 아니고 정치지망생 입장에서 접근한 흔적이 엿보이는 제도의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하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준비사무소 설치나 명함 정도를 본인이 직접 배포하는 정도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로 너무 엄격하게 묶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한 30일 전부터 이 정도는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조기 선거과열,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불법 선거비용 증대를 막기 위해서 예비후보자 개념,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일 7일 전까지는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기간 내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구구각색 아니겠습니까? 후보자의 의도가 반영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기간 중에 난무하게 되면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나가는 후보라고 인식되는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조금 불편을 겪고 제약을 받더라도 현행과 같이 선거기간 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액 기부자 명단 공개, 1회 100만 원 이상 기부는 수표 사용 의무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자금을 투명화하자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현재의 불법한 정치자금이고 오고 가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과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후원회 제도하에서 중앙당에는 법인이 연 2억 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또 국회의원 개인에게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역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개인이 일 국회의원에 2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적다 해서 불법으로 음성적인 자금을 주고받는 현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정치자금을 투명화할 수 있는 쪽으로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법적인 정치자금

을 음성적으로 수수하는 데 더 기여할 것이냐, 저는 그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가 저한테 보내온 설문조사지에 저는 그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보냈더니 심규철 의원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개혁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초신경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요. 정치현실을 고려해서 부정적인 금전 수수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치비용, 정치자금을 덜 쓸 수 있는 제도를 더 많이 강구해야 됩니다.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구조를 남겨 놓고 정치자금만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공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더 늘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세가 옳으나 19세가 옳으나, 어느 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악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국민적 합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민법상 일반 법률행위능력보다 더 낮은 능력으로도 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의 연령은 만 20세입니다. 20세가 지나야 친권자나 후견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선거권 행사가 부모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는 먼저 민법상 성년 규정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이제는 19세 정도만 되어도 일반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민법상 성년 규정이 19세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선거연령도 19세로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민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 연령만 19세로 인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정배 위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기구는 단순한 시민단체나 임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제안하셨고 그 후 각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장께서 주도해서 만든 기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 위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각계의 신망 있고 정치개혁에 관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개혁특위가 그리고 국회가 정치개혁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근본적인 취지만큼은 매우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2월 31일이면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1주일이나 10일 이내에 집중적인 논의와 협상을 거쳐서 정치개혁 안을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치개혁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의 최고 핵심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7년 1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사에 기념비적인 정치자금 개혁이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97년 11월 개정 이전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가성이 없는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것이 과거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초선의원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런 정치자금법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입법의 미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정치자금법을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영성하게 만들다 보니까 처벌조항을 빠뜨렸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97년 11월 우리 국회에서 모든 정치인

들이 이제 앞으로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다른 자금을 받게 되면 그것이 대가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요즘 이미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을 불법으로, 조폭적 방식으로 주고받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멸은 더 이상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분명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1회 100만 원 초과, 1년간 500만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와 비슷한 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인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정치인들은 다 후원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저만 공개한다면 저 자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동일한 조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규철 위원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가 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하셨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는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막을 수 있는, 예컨대 돈세탁방지제도 등을 보완한다거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선관위를 포함한 사직당국에 좀더 분명한 조사권을 준 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그냥 과거로부터 흘러온 정치의 현실만을 고려해서 개혁적인 입법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개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在 委員** 다른 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李敬在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기남 위원님께서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 또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내용을 조율한 것은 전혀 아니다,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잘 알 것입니다.

특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구를 1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며칠 전 신기남 위원이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숫자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정치자금법 관계는 한나라당에서는 기업과 정당 또는 국회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후원회제도까지도 폐지하고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서 1% 정도를 선관위에 내서 그것을 정치자금화하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당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계자 협의회나 국민 또는 다른 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아직까지도 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일 후원회제도를 살린다면 기부금의 공개 또는 기업회계, 당 또는 개인의 수입과 지출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고의 정당 배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까마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득표율로 계산한다 하는 것은, 개혁의 중심을 원내정당화, 원내정책화한다 하는 것이 금년도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되었고 또 각 정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원에 의해서 다른 선거조직이 다 끝나버리고 당 조직도 중단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월급이나 국고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원내정당화에 부합되는 것이냐, 정반대로 가고 있

는 것 아니냐, 어떤 정당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당이 해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은 전국구비례대표제가 한 사람인데 14억 원이나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생산치 못하는 불임 정당만을 키워 가지고 국고보조나 받는 그러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정치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석패율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신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짝झ이하는 부분으로 인해 지역 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 짝झ이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제와 관련해서 공명선거감시단 구성 및 활동경비를 전액 보전해야 된다, 말하자면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각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해서 선관위와 합동으로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해서 철저히…… 지구당을 없애고 지구당 모임이나 불법운동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면별로 구성된다면 아마 거의 활동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공영제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각 소위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柱宣 委員** 우리가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각 당의 협상과정도 사심을 버리고 개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의식과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도 정말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현재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이 투명화되지 않아서 문제되느냐, 사실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투명화하면 정치자금이라는 미명하에서 주어지는 수백억, 수십억의 부정한 기업 갈취나 뇌물성 자금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개혁을 통해서 불법 자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정부패 상황이 만연되는 것을 막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시민단체의 이야기만을 100% 수용하는 그런 정치개혁 협상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여기에서 토의에 부쳐 가지고 결정해 버리면 결론이 빨리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내주 중에라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 강제권을 발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전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희 위원** 선거법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100% 선거공영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은 후보자가 안을 내면 유인물 만드는 것은 선관위에서 하고 선거유세 차량도 선관위에서 만드시고 만약 전화홍보원을 허용한다면 전화홍보원을 법정 인원 수만큼 모집해 주면 그것을 선관위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는 어쨌든 매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는 형식상으로는 선거공영제이지만 실제로는 탈법을 만들고 있고 불법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선관위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소위활동을 벌여 가지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일으켜 내자는 의견들이신데 위원장인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활동 시한을 언제까지로 잡아주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위활동을 매듭지어 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18, 1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선거구제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어야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안을 우리 정개혁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서 의결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겨주어야 앞으로 18, 19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소위활동 시한을 어느 정도로 잡아주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金學元 委員**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불합치 판결 시한이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넘기면 현재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상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이것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위반된 선거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 지역구를 기반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구 의원 272명 모두에게 국회의원 자격상실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주어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1주일 시한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이것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7일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7일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주 말까지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시한을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기남 위원**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고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각 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다 환하기 때문에 토론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딱딱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열린우리당의 안은 정개협의 개혁안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서 안 되면 표결하든지 무효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주 내에 한 번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당론만 확정되어 있다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는 금주 내에 끝내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표결하든 결렬시키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지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7일로 결정되어 있으니 혹시 정 안 되어서 나중에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16일까지로 못박아줌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7일로 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늦어도 16일쯤에는 선거구제도에 관한 결론을 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활동은 시한을 15일까지로 정해서, 그 안에 소위원장님들과 소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개혁안을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7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내드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중앙선관위 핵심관계자를 입회시켜서 하루만 진지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하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16일 오후 2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활동은 15일까지 매듭 지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出席委員(16人)**

金聖順	金容鈞	金學元	목요상
박종희	朴柱宣	신기남	심규철
李敬在	이규택	李方鎬	全甲吉
전재희	정의화	천정배	黃昌株

○**請暇委員(1人)**

이병석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회관	李秉吉

【**報告事項**】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12월8일 김형오·박명환·이원형·김락기·김덕규·박인상·박재욱·권기술·박근혜·심재권·안상수·이종걸·서병수·황우여·정철기·하순봉·이양희·이방호·전용원·현경대·박종근·전용학·이성현·유홍수·이상배·김덕룡·정동영·정갑윤·서청원·안동선·강창희·김용갑·이상희·김학송·이주영·윤영탁·원희룡·김부겸·김동욱·양정규·박진·박헌기·권철현·김무성·김병호·강재섭·정의화·김정숙·권태망·안경률·김진재·김광원·민봉기·이인기·박혁규·조한천 의원 발의)

12월8일자 회부됨